

공작물 축조 신고서

• 어두운 란()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※ 설계자·공사시공자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
신고번호(연도-기관코드-업무구분-신고일련번호)	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일
건축주	성명	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		
	주소 (전화번호 :)				
대지조건	대지위치		지역		
	지번		지구		
	지목		구역		
※ 설계자	성명		자격번호		
	사무소명		신고번호		
	주소				
※ 공사시공자	성명	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		
	회사명		면허번호		
	주소				

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8조 제1항)

• 굴뚝, 장식탑, 기념탑, 광고탑, 광고판, 고가수조, 옹벽, 담장, 지하대피호, 골프연습장 철탑, 통신용 철탑, 기계식 주차장, 철골조립식 주차장, 기타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

종류	구조	높이 (m)	길이 (m)	면적 (㎡)	건폐율 (%)

「건축법」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건축주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안내				
첨부서류	1. 배치도 1부 2. 구조도 1부			수수료 원
제출하는 곳	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	처리부서	건축허가(신고)부서	
유의사항				
「건축법」 제110조	•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.			